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169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: 2017년 6월 16일
제안자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률 용어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의규정은 삭제하고, 시립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은 ‘감면대상 시설’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개정안에서 신설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함(안 제2조).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립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의2)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개정안 제2조 제3호 중 마목, 바목, 사목을 삭제한다.

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의2(우대) 시장은 가족여가문화의 촉진을 위하여 시립시설 가운데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 상의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4.·5. (생 략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4조(시민의 책무)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및 문화체험 지원 등

사. 가족친화 사회공헌 제도 : 한부모 가족, 조손가족(祖孫家族), 다문화가족, 독거노인,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제도

4.·5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

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시민의 책무) ---

-----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-----

-----.

제9조의2(우대) 시장은 가족여가문화의 촉진을 위하여 시가 설치·운영하는 공연·전시 또는 문화·유적 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<삭제> (현행대로)

(개정안대로)

(개정안대로)

제9조의2(우대) 시장은 가족여가문화의 촉진을 위하여 시립시설 가운데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상의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<p>제10조 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<u>제9조 제3호</u>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일·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10조 (설치 및 기능) ① (개정안대로) ----- <u>제9조제3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있다. ② 센터는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	<p>(개정안대로)</p>
<p>제12조 (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 ② <u>기타 민간위탁과 관련된 규정</u>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12조 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(개정안대로)</p>
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</u> <u>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4조(시행규칙) ----- ----- <u>필요</u>----- ----- -----.</p>	<p>(개정안대로)</p>